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
출연 승인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: 3,388천원

- 산정기준 : 전전년도(2014년도)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.5

(단위: 천원)

'14년 결산 지방세	'14년 결산 보통세			'16년 연구원 출연금
	소계(ⓐ+ⓑ)	현년도ⓐ	과년도ⓑ	
22,585,577	22,585,577	22,183,275	402,302	3,388

※ 출연금 산정액 : 22,585,577천원 × 1.5/10,000 = 3,388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「행정자치부 훈령」〈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〉 【별표11】「세출예산 사업별 분류」기준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당초예산 편성(3,388천원)

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